

신용정보활용체계 개정 내역 신규 대비표
(개정일자 : 2022.12.20.)

규정 항목	기존 규정	개정 규정(안)	개정 사유
<p>□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및 종류</p>	<p>[신용정보의 종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고유식별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■ 개인일반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성명, 영문명, 생년월일, 연락처(휴대폰/주택/직장), 주소(주택/직장), 이메일주소, 국적, 성별, 직장명, 직종, 부서, 직위, 주요 경력 및 학력 ■ 신용능력정보(여신 및 투자 거래에 한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직업정보, 소득정보, 재산정보, 예상거래금액 ■ 공공기관 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개인회생, 파산, 면책, 채무불이행자 등재 정보, 체납정보 등 공공기관 정보 ■ 기타 정보 : 거래 목적, 거래 자금의 원천 및 출처 	<p>[신용정보의 종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고유식별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■ 개인일반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성명, 영문명, 생년월일, 연락처(휴대폰/주택), 주택주소, 이메일주소, 국적, 성별 ■ 신용능력정보(여신 및 투자 거래에 한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직업정보, 직장정보, 소득정보, 재산정보, 예상거래금액 ■ 삭제 ■ 기타 정보 : 거래 목적, 거래 자금의 원천 및 출처 	<p>▶ 당사가 실제 취급, 활용하는 신용정보 항목 수정, 변경</p>

<p>□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</p>	<p>□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당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. ■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본 신용정보활용체계 수정을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. 	<p>□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정보 제공대상 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 ▸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 요구하는 공공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, 법원, 검찰청 등 수사기관, 조세관청 등 ▸ 펀드출자·운용·관리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, 한국벤처투자(주), 농업정책금융보험원 ■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관계 법령에 근거한 업무 수행 ▸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▸ 투자기업 및 펀드의 운용과 사후관리 ■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개인 고유식별정보 및 일반정보, 금융거래내역 등 신용정보 	<p>▶ 항목 제목 변경</p> <p>▶ 법령상 제3자 제공 가능성 고려하고, 당사가 제정, 운용하는 「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조회 및 제공 필수동의서」 양식에 기재된 문구와 일치 필요성 등 고려하여 신용정보활용체계 수정 공시</p>
<p>□ 신용정보업무의 위탁 처리</p>	<p>□ 신용정보업무의 위탁 처리</p>	<p>□ (삭제)</p>	<p>▶ 신용정보활용체계 필수 공시 정보 미해당 ☞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에서 공시</p>

<p>□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종류 및 행사 방법</p>	<p>■ 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신용정보법」 이라 한다) 등의 법률에 의거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nauib.com)를 이용하거나, 당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◆ 신용정보 이용·제공 사실의 조회·통지 요구권(「신용정보법」제35조)</p>	<p>■ 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신용정보법」 이라 한다)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은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nauib.com)를 이용하거나, 당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◆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(「신용정보법」제33조의2)</p> <p>- 고객은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(고객) 및 신용정보관리회사,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금융기관,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◆ 신용정보 이용·제공 사실의 조회·통지 요구권(「신용정보법」제35조)</p> <p>- 고객은 최근 3년간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가 내부 경영관리 목적,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</p>	<p>▶ 문구 수정</p> <p>▶ 권리보장 항목 중 누락 조항 추가</p> <p>▶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항목의 세부 내용 요약 설명 추가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(「신용정보법」제36조) ◆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권리(「신용정보법」제36조의2)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는 제외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(「신용정보법」제36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,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·주소·연락처, 신용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,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◆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권리(「신용정보법」제36조의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,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, 자동화평가의 결과, 주요 기준, 기초 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항목의 세부 내용 요약 설명 추가 ▶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항목의 세부 내용 요약 설명 추가
--	--	---	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한 내용 철회권(신용정보법」제37조) ◆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(「신용정보법」제 38조) 	<p style="color: red;">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한 내용 철회권(신용정보법」제37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객은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이 어려워지거나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◆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(「신용정보법」제 38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객은 본인의 실명확인을 통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언제든지 교부 또는 열람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서면,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항목의 세부 내용 요약 설명 추가 ▶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항목의 세부 내용 요약 설명 추가
--	---	---	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개인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(「신용정보법」제 38조의3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열람한 고객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고객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정정 조치를 한 후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7일 이내 알려야 하며, 해당 고객은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◆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(「신용정보법」제 38조의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정보법 제 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※ 법령에서 정한 기간 및 삭제 요구 가능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: 5년 2. 위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외의 개인신용정보 : 3개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항목의 세부 내용 요약 설명 추가
--	---	---	---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삭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- 회사는 고객의 삭제 요구가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	
--	--	---	--